

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구직자취업촉진법’)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인정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,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8. 6.

대 구 지 방 고 용 노 동 청 포 항 지 청 장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
2. 근 거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 명 (생년월일)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송달 불능 사유
			처분 사유	처분 내용	
신*현 (74.8.26.)	경상북도 경주시 충효녹지길46 (이하 생략)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철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	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에 따른 초기상담을 위해 전화연락 및 출석통지하였으나,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한 상담일('26.7.6./'26.7.20.)에 방문하지 않음.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및 재참여 제한기간 3년 적용	폐문부재

4. 공고기간: 2026. 8. 6.~2026. 8. 20.(15일간)
5. 의견제출방법: 공고기간 내 직접 방문(경주고용센터 6층 국민취업지원팀) 또는 팩스(0503-8803-0531)
6. 기타 사항은 경주고용복지+센터 성지영(☎ 054-778-250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